

(20 년도)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등기상 소유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신고인 구분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① 향교재단 [] ② 종교단체

3. 개별단체(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별 과세물건 합계표

번호	③ 개별단체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⑤ 과세물건 합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합 계								
1								
2								
3								
4								
5								

4. 점검 항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점검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 표를 합니다.

1.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는 개별단체 과세물건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이 특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등기한 과세물건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3. 이 특례는 매 과세연도 마다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4. 개별단체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를 적용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향교만 해당) 향교재단 및 개별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합산배제가 적용되므로 과세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의 신고사항에 대해 개별단체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3.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4.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 4.에 해당하는 서류는 최초로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과세물건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① 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을 말합니다.
2. "② 종교단체"는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를 말합니다.
3. "③ 개별단체명"란 및 "④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란: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 "1. 개별단체"에 기재된 개별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⑤ 과세물건 합계"란: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 "3.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개별단체별 합계 물건 수와 공시가격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0 년도)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1. 개별단체(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개별단체 구분 ※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①개별 향교	[] ②소속 종교단체
--------------	----------------

3. 과세물건 명세

번호	③소 재 지	④과세 유형	⑤주택 종류 (지목)	⑥감면 후 공시가격	⑦과세면적	
					토지	건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갑)[별지 제64호의13서식(1)] 2. 신고인 구분이 "향교재단"인 경우에는 "2. 개별단체 구분"에서 "① 개별 향교"를 선택하고,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②"소속 종교단체"를 선택합니다.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인 것으로 보아 별지로 작성합니다.
가. "① 개별 향교"는 향교재단에 소속된 개별 향교를 말합니다.
나. "② 소속 종교단체"는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2. "③ 소재지"란: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의 주택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토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토지를 적습니다.
3. "④ 과세유형"란: 주택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종합", 별도합산토지는 "별도"를 각각 적습니다.
4. "⑤ 주택 종류(지목)"란: ④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로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5. "⑥ 감면 후 공시가격"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에 지분율과 감면율을 반영한 후의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과세면적"란: ④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한 건물(공용면적을 포함)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 "종합" 또는 "별도"인 경우에는 지분율과 감면율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